

신청역한라비발디 입주예정자님, 안녕하십니까?

우리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될 「다함께돌봄센터」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●우리 아파트는 1,297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로서, 주택법 제35조제1항(주택건설기준 등)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(주민공동시설),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(다함께돌봄센터)에 의거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행 할 「다함께돌봄센터」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.

신축되는 우리 아파트 단지 내 ‘어린이집’에는 돌봄센터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, 사업주체(☞무궁화신탁, 위탁사 (☞다우개발)는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요사를 한 후 지지체(시흥시)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●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“관반수의 입주예정자가 서면으로 돌봄센터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” 설치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.

●이에 따라 「다함께돌봄센터」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 또는 수요조사를 요청드립니다.

구 분	요청사항	기한	비고
설치 반대의견	돌봄센터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(첨부 「반대의견서」) 우편으로 제출	2025.6.27.	제출주소 :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179, 유영빌딩 2층 (☞다우개발
돌봄센터 수요조사	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세대 제출	2025.6.27.	분 양 홈 페 이 지 www.halla-shincheon.co.kr 제출
기 타	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	2025.6.27.	

●돌봄센터는 「사업주체의 공간 구축 → 시흥시·사업주체 협약 체결 → 시흥시 위탁업체 모집 → 위탁업체 운영」의 과정을 거쳐 운영될 예정이며,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‘시흥시·사업주체 협약’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 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.

●설치 반대의견이 관련 법령을 충족하는 경우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.(찬성의 경우 별도 공지 없음)

2025.5.26.

사업주체 (☞)무궁화신탁 위탁사 (☞)다우개발 (직인생략)